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90

발의연월일: 2024. 9. 2.

발 의 자: 박주민 • 이수진 • 박지혜

복기왕 · 오기형 · 모경종

박해철 · 서영교 · 윤준병

이용우 · 이훈기 · 박지원

위성락 • 황명선 • 채현일

김 윤·문금주·김영환

김현정 • 전진숙 • 강준현

민형배 · 송재봉 · 장철민

차지호 · 허 영 · 이상식

한준호 • 박균택 • 서삼석

서영석 • 김재원 • 소병훈

정진욱 • 천준호 • 박희승

김선민 • 이춘석 • 박상혁

이기헌 · 이재관 · 조 국

추미애 · 임호선 · 고민정

이건태 · 박정현 · 백승아

박은정 · 김성회 · 정성호

황운하 · 김남희 · 이재명

민홍철 • 이연희 • 남인순

진성준 · 정태호 · 송옥주

이용선 · 김동아 · 최민희

김남근 · 김종민 · 정춘생

주철현 • 박홍근 • 한창민 용혜인 · 이성유 · 전종덕 민병덕 • 전현희 • 양부남 안도걸·조인철·서왕진 허성무 · 정준호 · 신장식 이학영 · 김준혁 · 맹성규 임오경 · 강선우 · 윤종오 서미화 · 김우영 · 김영호 염태영 · 이해민 · 윤종군 권향엽 · 김문수 · 장종태 김한규 · 박홍배 · 김승원 강득구·백혜련·송기헌 윤후덕 • 이재정 • 김용민 정혜경 • 진선미 • 김 현 이개호 • 한민수 • 이강일 천하람 • 윤호중 • 안태준 이재강 의원(115인)

제안이유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1975년 5월 13일 발령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무효임이 명백하고, 긴급조치 제9호의 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면서 종전의 판례를 변경함.

그런데 긴급조치의 위헌 자체를 이유로 하여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당시 판례가 이를 부정하여 소멸시효(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판결), 재판상화해(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2다204365판결), 긴급조치 발령의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 공무원의 고의·과실 부인 (2014. 10. 27. 선고 2013다217962판결) 등을 이유로 패소판결이 확정된 피해자들은 구제를 받지 못하는 반면, 소송 진행 중에 판례가 변경된 피해자들은 판례 변경으로 인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은 형평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민사재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형 사재심절차를 통한 무죄판결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 을 보장하도록 하는 특별법안을 마련함으로써 긴급조치 피해자의 명 예를 회복함과 동시에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하고 진정한 법치국가를 구현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헌·무효인 긴급조치를 발령·적용·집행한 국가의 행위가 위법 함을 확인하고,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았으나 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민사재심의 특례를 마련하고, 형사재심절차를 통한 무죄판결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함으로써 진정한 법치국

가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대법원이 2022년 8월 30일 선고한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이전에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긴급조치 피해자와 그 가족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 다. 긴급조치 피해자 등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형사재심절차에서의 무죄판결 또는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 등과 관계없이 「국가배상 법」에 따른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 라. 제3조의 민사특별재심청구 및 제4조의 국가배상청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안 제5조).

법률 제 호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위헌·무효인 긴급조치를 발령·적용·집행한 국가의 행위가 위법함을 확인하고,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았으나 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민사재심의 특례를 마련하고, 형사재심절차를 통한무죄판결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함으로써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회복함과 동시에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하고 진정한 법치국가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유신헌법"이란 1972년 12월 27일 헌법 제8호로 전부개정된 헌법을 말한다.
- 2. "긴급조치"란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하여 1974년 1월 8일 발령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1974년 4월 3일 발령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1975년 4월 8일 발령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7호」, 1975년 5월 13일 발령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를 말한다.
- 3. "긴급조치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긴급조치 제1호, 제4호, 제7호 및 제9호 위반으로 인하여 법원 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
- 나. 긴급조치 제1호, 제4호, 제7호 및 제9호 위반으로 인하여 법원 에서 선고유예 또는 면소판결을 받은 사람
- 다. 긴급조치 제1호, 제4호, 제7호 및 제9호 위반으로 인하여 수사 를 받고 검사의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람
- 4. "긴급조치 피해자의 가족"이란 긴급조치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 제3조(민사특별재심) 대법원이 2022년 8월 30일 선고한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긴급조치 피해자와 그 가족은 「민사소송법」 제451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제4조(국가배상의 청구) 긴급조치 피해자와 그 가족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형사재심절차에서의 무죄판결 또는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 등의 유무와 관계없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5조(재심 등 소 제기의 기간) 제3조에 따른 민사특별재심청구 및 제 4조에 따른 국가배상청구는 이 법이 시행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 기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재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453조부터 제455조까지 및 제458조를 준용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